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및
어선거래시스템 명칭 변경 등〉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744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및 부칙	3
2. 어선거래시스템 명칭 변경 등	11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 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Ⅲ. 검토의견

1.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현행 「어선법」은 어선의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규제 중 하나로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外力)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뜻하는 ‘복원성’¹⁾에 대한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기준을 현행 법상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경우’에서 ‘12미터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2),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되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 및 이 법 시행 후에 건조된 어선으로서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이 법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 ----- ----- -----

1)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u>24미터</u> 이상인 어선 2. (생 략) ② ~ ⑤ (생 략)	----- ----- -----. 1. ----- <u>12미터</u>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 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원성 승인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되 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은 제 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에 건조된 어선 으로서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나. 검토의견

(1)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 ☐ 최근 5년간 발생한 14,802건의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9,602건(64.9%), 해양사고 사망자 391명 중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5명(78.

0%)에 이르는 등 해양사고의 다수가 어선어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 547건) 중 130건이 전복 또는 침몰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복·침몰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어선의 복원성 상실이 지적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사고 현황

구 분	합 계	사 망	실 종	부 상
전체 해양사고	14,802건	391명	146명	2,005명
어 선	9,602건(64.9%)	305명(78.0%)	123명(84.2%)	1,593명(79.5%)
어선 외	5,200건(35.1%)	86명(22.0%)	23명(15.8%)	412명(20.5%)

자료: 해양수산부

[표] 어선사고 인명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주요사고					안전 사고	좌초	접촉	기타
		소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합계	547	213	53	105	25	30	320	1	7	6
2019	79	40	10	15	0	15	38	0	0	1
2020	99	35	7	20	0	8	60	0	4	0
2021	89	29	5	20	3	1*	59	0	1	0
2022	83	25	6	12	3	4	56	0	0	2
2023	78	26	10	14	2	0	48	0	1	3
2024	119	58	15	24	17	2	59	1	1	0

자료: 해양수산부

□ 어선을 포함한 선박에서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

아오려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복원성이 낮을수록 선박이 전복 및 침몰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 등은 어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복원성 기준을 정하여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어선법」의 경우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및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을 복원성 승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 복원성 승인 대상을 배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한 것은,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정하는 선박안전 관련 국제규범²⁾에서 배 길이 24미터를 기준으로 복원성, 선체 구조 등 안전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현행법이 이를 참고하여 국내 어선 규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임.

[표] 「어선법」 상 복원성 승인 체계

승인대상 (어선법 제3조의2)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승인 주체 및 기준 (어선법 제3조의2 등)
① <u>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u> ②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승인주체: 해수부장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에 위탁 ◦ 승인기준: 어선복원성 및 만재홀수선 기준(해수부 고시 제2019-86호)에서 상세규정

2) 어선 안전 관련 국제 규범 현황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에 대해 복원성, 선체 구조, 구명설비, 통신장비, 화재 방지 등 안전성 관련 국제 기준을 의무화(우리나라는 2021년 12월부터 가입 절차 개시, 2024년 기준 비준하지 않음)

-어부 및 어선의 안전에 관한 규범 (Code of Safety for Fishermen and Fishing Vessels): FAO, ILO, IMO가 공동으로 개발한 비구속적인 지침으로 내용 중 일부에서 24m 이상의 어선의 설계, 건조 및 장비에 대한 안전 요건을 규율

승인대상 (어선법 제3조의2)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승인 주체 및 기준 (어선법 제3조의2 등)
	3. 어선을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안은 어선의 복원성 상실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 [전복 15건('19년)→24건('24년) / 침몰 0건('19년)→17건('24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복원성 승인의 대상을 현행 배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서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어선의 복원성은 선박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므로,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더 많은 어선이 복원성에 대한 검사·승인을 받게 되어 전반적인 어선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최근 3년('22~'24년)간 어선 길이별 신조(新造)·등록어선 수 현황을 보면, 총 976척의 신조어선 중 24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은 21척, 12~24미터 이하 어선은 279척으로 개정안 입법 시 복원성 승인 대상이

현행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최근 3년('22년~'24년)간 어선 신조 및 등록 건수

구 분	합 계	24m초과	24m~20m	16m~20m	12m~16m	12m미만
신조(척수)	976	21	32	119	128	676
등록(척수)	64,233	1,244	1,225	2,194	6,111	53,459

자료: 해양수산부

□ 다음으로 복원성 승인을 위한 어선검사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원거리 항해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영세한 소형 어선에 대해서는 복원성 승인이 일부 부담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업형태상 위험성이 적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복원성 승인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어선어업에 미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선박안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는 호소·하천 및 항내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이나,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 등에 대해서는 복원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복원성 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항행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될 우려가 적어 복원성 관련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로, 내수면어선은 복원성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부칙 경과조치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복원성 승인에 관한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건조된 어선으로서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되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 소유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고, 크기가 작은 어선의 경우 제한된 선복량 하에서 복원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및 건조 등에 일정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부칙과 같이 어선의 길이별로 적용시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개정안 부칙에 따를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건조에 착수하여 이 법 시행 후에 건조된 어선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조제2항에 따라 길이별로 2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에 건조된 어선의 경우 배의

길이에 따라 종전 또는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이 복잡하여 수범자인 선주 등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선박을 개조³⁾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경과조치 대신 적용례를 두어 이 법의 시행 이후에 건조·개조에 착수한 어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수범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2. 어선거래시스템 명칭 변경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 포털’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u>어선거래시스템</u>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국가어선정보포털 등의 구축·운영) ① ----- ----- ----- ----- ----- ----- <u>국가어선정보포털</u>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어선거래시스템</u> (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② ----- - <u>국가어선정보포털</u> (이하 “국가어선정보포털” ----- ----- ----- ----- ----- ----- ----- ----- -----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u>어선거래시스템</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u>어선거래시스템</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u>어선거래시스템</u>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u>어선거래시스템</u>의 관리·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 ③ ----- <u>국가어선정보포털</u>-----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국가어선정보포털</u>----- ----- ④ ----- <u>국가어선정보포털의 운영</u>----- ----- <u>국가어선정보포털</u>의 관리·운영----- -----. ⑤·⑥ (현행과 같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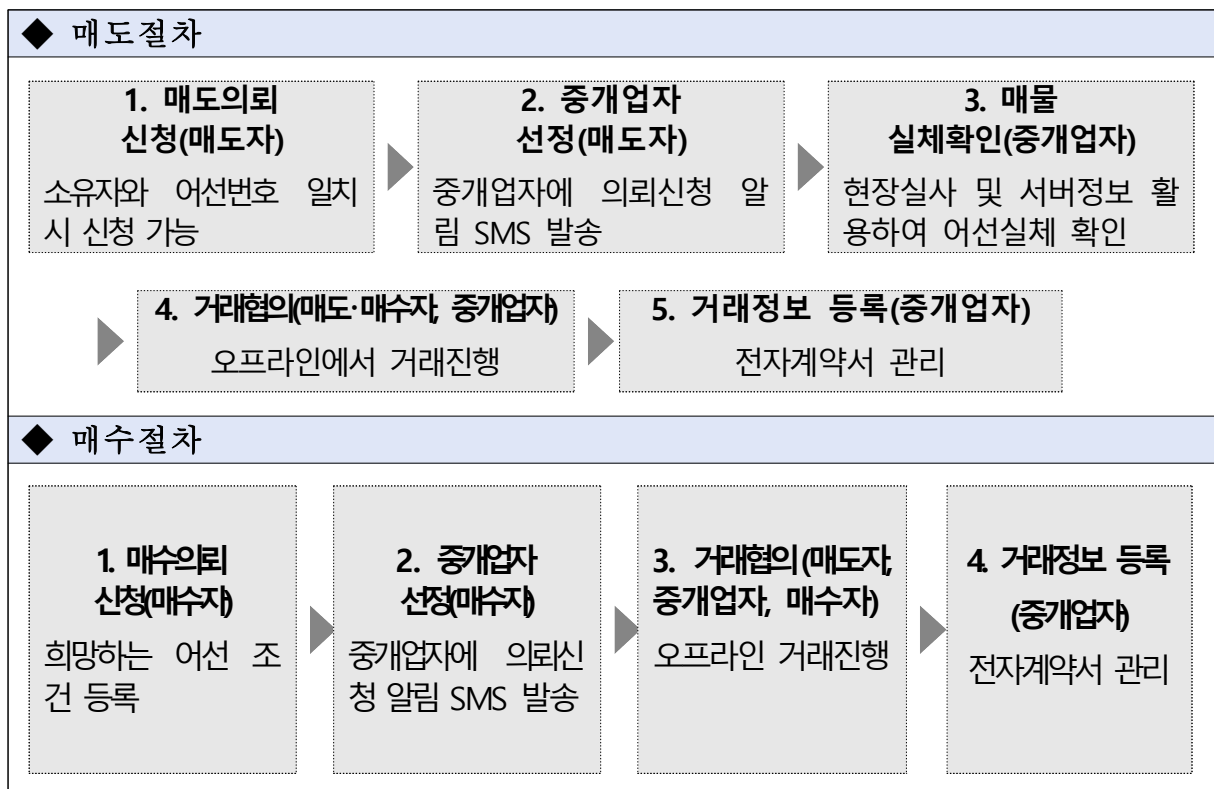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선거래가 공개시장 없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 위주로 이루어져 사기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요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⁴⁾,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선중개업자와 국민(어업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5월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어선거래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7.

-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 관련 정보(어선 기본정보, 매매가격, 검사 정보 등)를 어선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해 건전한 어선거래 중개가능하도록 도모하려는 시스템으로, 「어선 매입·매도 희망자가 어선거래시스템에 거래의뢰 등록 → 중개업자가 중개를 희망 → 매입·매도 의뢰인이 중개업자 선정 → 중개업자가 어선의 실체를 확인한 후 거래 진행」의 절차로 진행되는 구조임.

[표]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전체 어선거래 건수 중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거래실적과 매물등록건수가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국회의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시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 제고 방안이 지적된 바 있었음.

-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어선거래 7,109건 중 동 시스템을 활용한 중개 계약 건수는 35건으로 전체 거래건수 대비 0.49%로 나타남.

[표] 어선거래시스템의 연도별 활용실적

(단위: 건, %)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9월말 ³⁾
매물등록합계(A)	2,078	40	254	300	317	357	535	275
매 도	1,889	26	223	280	279	316	508	257
매 수	189	14	31	20	38	41	27	18
거래완료건수(B)	101	6	1	12	19	14	35	14
전체 어선거래 건수(C)	49,384	6,293	8,397	9,766	9,415	8,404	7,109	-
어선거래시스템 매물등록비율(A/C)	4.2	0.63	3.02	3.07	3.37	4.25	7.53	-
어선거래시스템 사용거래비율(B/C)	2.0	0.09	0.01	0.12	0.20	0.17	0.49	-

주: 1) 2018.5.1.부터 지자체 어선 소유자 변경 등록건을 취합 작성함

2) 직거래 및 중개거래 모두 포함

3) 2024년 전체 어선거래건수(C)는 2025년 초 집계됨

자료: 해양수산부

[표] 어선거래시스템 관련 국회 지적 사항

구 분	국회 요구사항	요구유형
2020 결산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2021 결산	어선거래시스템 홍보강화 및 선박 하자 보증 담보 제도 마련 필요	제도개선
2022 결산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2023 결산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
2024 국감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 대한 조치결과(2025.1.)’⁵⁾에서 어선거래시스템의 고도화, 홍보 및 불법거

5)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래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법·제도 정비 및 어선중개업자 양성 지속을 통한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동 시스템을 어선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 어선정보포털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말까지 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어선거래시스템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용이 저조한 어선거래시스템을 어선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변경하여 그 활용률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①개인이 어선중개업자가 등록한 정보만 확인한 후 실제 거래는 직거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②매물 등록 주체인 어선중개업자가 매물을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 ③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중개업자를 통한 매매만 가능하여 거래방식 선택이 제한되고, 실제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이나 사고이력 등은 공개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분석·제시한 바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시스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용률 저조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설 ‘국가어선정보포털’이 어선거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으로 기능하여 어선거래의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 변경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어선정보 포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2